

의안번호	2211896
의 퇴 인	김태선의원
회 답 일	2025.10.23.
추계번호	25B413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를 주거약자에 포함하여 동법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3,300만원, 2031년 5억 7,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6억 6,400만원(연평균 3억 3,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정의(안 제2조) -지원대상아동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533	—	554	—	577	1,664	333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신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신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개정안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¹⁾과 ‘「청소년복지 지원법」²⁾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를 추가하는 것으로, 주거약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정소요의 변동이 예상되는 조문과 추계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표 2] 현행법 조문별 재정수반요인과 추계여부

조문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
제7조	주거실태조사	○	• (추계) 주거실태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	• (미대상) 개정안에 따라 주거약자에 지원대상아동 등이 추가되더라도 기존 의무건설 ³⁾ 범위 내에서 공급 ⁴⁾ 이 가능하여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	• (제3호) 개정안의 시행으로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시설 설치비용 지원이나,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물량, 지원단가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	• (제3호) 주거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확대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지원대상아동 등의 규모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센터 인력·자원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주거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지원대상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지원대상아동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시행 범위 및 방법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이를 구체화하기 곤란하나, 현행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중 별도 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조사⁵⁾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일정비율(수도권 건설 공공임대주택: 8%, 수도권 외 지역 건설 공공임대주택: 5%) 이상을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 「주거기본법」 제20조제2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격년에 1회씩 혹은 비정기적으로 특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실시사례를 준용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2024년에 실시된 주거실태조사(특수조사)를 참고하여 표본수 6,7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아동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거취약계층인 지하·반지하 등 거주가구의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6,7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 실시(5억원, 비정기적 조사)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⁶⁾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원대상아동 등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 실시비용으로 조사대상 표본 수에 조사비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추계대상) 지원대상아동 등⁷⁾ 신규 포함 대상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표본수는 지하·반지하 등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특수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6,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표본 수 6,700가구, 실시주기는 2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6)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5.3.)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7) 개정안에 따른 「아동복지법」 상 지원대상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다만, 경찰청의 9~19세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건수는 2024년 기준 28,361명, 여성가족부의 9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 중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10만명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 수 추정에 참고할 수 있음

[9~19세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0,875	23,133	28,643	27,865	28,361

자료: 경찰청

한편, 청소년부모 가구는 보건사회연구원(2023)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는 2,298가구로 나타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 (조사비 단가) 조사비 단가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 특수가구 조사비 단가(75,000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산
- (일부추계) 이상의 가정에 따라 추계한 결과, 지원대상아동 등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3,300만원, 2031년 5억 7,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6억 6,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조사 대상 (가구, A)	6,700	—	6,700	—	6,700	—
조사비 단가 (가구당, 원, B)	79,513	—	82,725	—	86,067	—
주거실태조사 (A×B, 백만원)	533	—	554	—	577	1,664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 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단위: 가구)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가구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가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38	126	2,298	7,361	111,076

자료: 이상정, 위기취약 청년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05. p. 47~58.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주거실태조사 개요⁸⁾

□ 법적 근거

- (근거)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06년부터 실시*)

□ 목적

-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 주거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일반가구, 특성가구(청년, 신혼부부, 고령, 장애인, 소득하위가구)
 - －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정책조사(특수가구조사)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해, 정책조사는 홀수해에 실시하였으며, 2017년 이후 일반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음
- 2017년 이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고령·저소득 등의 특수가구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음

□ (조사범위)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

□ (조사내용) 점유형태, 생애최초주택마련 경험, 주택구입가격·임차료 등, 주택면적·시설 등 주거환경, 이사계획, 가구소득·구성·자산 현황 등

- (표본 수) 일반가구: 61,000가구, 특성가구(8,000~10,000가구)
 - － 청년, 신혼부부는 2020년부터 일반가구에 포함하여 매년 실시
- (조사주기) 매년(일반가구), 격년 혹은 비정기(특성가구)
 - － 2006부터 짝수년 주기로 진행(표본 2만가구) 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 표본 확대(2만→6만)와 함께 매년 추진 중에 있음
- (조사방식) 1:1 가구 면접조사
- (기관) 국토연구원, 한국리서치

8)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주거실태조사 표본수 및 조사현황]

	일반조사	조사내용	표본수	조사주기
일반조사	2006	일반가구	30,000	격년
	2008		30,000	
	2010		33,000	
	2012		33,000	
	2014		20,000	
	2016		20,000	
	2017	일반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가구 포함)	60,000	매년
	2018		61,000	
	2019		61,000	
	2020		51,000	
	2021		51,000	
	2022		60,000	
	2023		61,000	
	2024		61,000	
	2025		61,000	
특수조사	2007	노인가구 및 장년가구	25,000	격년
	2009	장애인가구	10,000	
	2011	임대주택 거주가구	60,000	
	2013	저소득가구	10,000	
	2015	장애인가구	8,000	
	2017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⁹⁾	8,000	비정기
	2019	장애인가구	3,000	비정기
	2022	비주택주거실태조사	8,000	비정기
	2023	장애인가구	6,700	비정기
	2024	비주택주거실태조사	6,700	비정기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5년 및 국토교통부 예산사업설명자료

□ (예산) 주거실태조사 예산현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주거실태조사 예산	3,155	3,480	3,450	2,950

9) 주택이외의 거처: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상가, 공장, 여관 등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